

# 보도자료



**기획재정부**  
MINISTRY OF STRATEGY  
AND FINANCE

보도일시	<b>2010. 1. 25(월) 배포시</b>		
배포일시	2010. 1. 25(월) 14:00	담당부서	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
담당과장	황정훈(2150-4130)	담당자	이종철 사무관(2150-4134)

## 제목: 세종시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추진

- 정부는 세종시의 성격이 행정중심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변경됨에 따라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세종시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
  - 세종시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기업도시 입주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지원을 신설하여 허용하고,
  - 아울러,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혁신도시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동일수준 세제지원 신설
- 「조세특례제한법」을 개정하여 조치하되, 금주 1.27(수)부터 20일간 입법 예고, 10일간의 부처협의절차와 차관회의,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개정 법안을 제출할 계획임

### ◇ 세종시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음

- (감면대상)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(세종시) 예정구역 및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내 창업하거나 신설한 기업
- (대상업종) 제조업, 전기통신업, 연구개발업, 정보서비스업 등 33개 업종
- (투자금액) 100억원 이상(연구개발업 20억원, 물류업 50억원 이상)
- (감면범위) 법인세·소득세 3년간 100%, 2년간 50% 감면, 취득등록세 감면 등
- (일몰기한) '12.12.31까지 3년간
- (적용시기) 시행일 이후 창업하거나 신설한 기업부터 적용

기획재정부 대변인